

과외 자료

롤스의 정의론

1 절 정의의 역할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 1 덕목

모든 사람들은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지닌다. 따라서 타인들이 갖게 될 더 큰 자유를 위해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는 공리주의와 대척점에 서있는 부분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 수립을 위한 가정들을 제시한다.

가정 1: 사회 공동체는 성원 상호간의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정도 자족적인 공동체이다. (대부분이라는 워딩에 주목하자, 사회내에서 부정의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가정 2: 성원 상호간의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즉 그 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마련된 행동체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사회 상호간은 협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더 큰 몫을 원하기에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분배의 몫을 결정할 분배규칙(사회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사회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할당 방식을 제시하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을 결정한다.

사회정의 원칙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이다. 이러한 질서정연한 사회는 두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2. 사회의 기본제도가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 원칙을 만족하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있다.

만약 사회정의의 원칙이 없다면 서로 이익이 되는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지며 불신과 원한이 사회적 유대를 좀먹고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한 의혹과 적개심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절 정의의 주제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의 원칙들의 첫번째 목표는 무엇일까?

정의의 원칙들의 첫번째 목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과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회제도는 인간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그들의 인생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의의 원칙의 일차적 목표인 사회 기본 구조는 여러가지 사회 지위들이 속해 있으며 사회 지위들은 사회 기본 구조와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로 서로 상이한 인생 전망을 갖게 된다.

이것을 롤스는 **뿌리깊은 불평등**이라고 비판한다.

뿌리깊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롤스는 사회정의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 되어야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원칙들은 정치조직의 선택과 경제적 사회적 중요요인들을 규제하게 된다.

cf) 기본구조에 적합한 정의의 원칙이라도 모든 경우에 타당하진 않다. 왜냐하면 소규모의 사회집단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의관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을 평가할 기준을 제공하며, 롤스는 사회정의관 수립을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을 일부인 '과다를 삼가하는 것'을 본인의 정의관에 차용한다.

잠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에 대해 알아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은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 정의는 준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법은 정의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이므로 법을 지키는 것은 정의이며 법을 위반하는 것은 부정의이다. 특수적 정의는 다시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나뉘어진다.

분배적 정의: 각 개인은 공동체에 기여한 공에 따른 응분의 몫을 받는 것이다.

시정적 정의: 재판을 통한 정의실현, 산술적정의에 따른 정의, 정의로운 것은 이익과 손해의 중간점이며 자발적/비자발적 교섭 이전 이후에 있어 동일한 양을 가져야 한다.

교환적 정의: 원전에서 불명확한 정의이므로 생략한다.

이 질문에 대해 답해보자.

Q: 모든 부정의는 비례에 어긋난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x 이다. 분배적 정의를 위반하는 것이 비례에 어긋난 것이며 일반적 정의나 시정적 교환적 정의를 위반한 것은 비례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3 절 정의론의 요지

롤스는 로크, 루소, 칸트의 사회계약론을 추상화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정의론을 제시한다.

cf) 칸트도 사회계약론자이다.

2016 수능

사회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원초적 합의의 대상은 특정한 사회나 정부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조건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이것을 우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한다.

사회협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간에 상충하는 요구를 조정하는 방식과 그들 사회 기본 헌장(憲章)이 무엇인지 우선 정한 뒤, 무엇을 정의와 부정의로 구분할 것인지 정한다.

앞서 롤스는 로크, 루소, 칸트의 사회계약론을 추상화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정의론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롤스는 전통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상태를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초적 입장으로 차용한다. 원초적 입장은 가상적 상황이며 문화적 원시 상태가 아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개개인들은 아무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 모른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이를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며 다른 조건들과 함께 정리한 원초적 입장의 5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무관심함.
2. 사회가 어느정도 경제적 수준이 달성됨.
3. 무지의 베일
4. 경제학 심리학 등 일반적인 사실은 인지함.
5. 개인은 모험을 싫어함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당사자들이 이기주의자, 이른바 재산이나 특혜, 지배권등 특정 이익에 관심을 갖는 개인이 아니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에서 과연 공리의 원칙이 채택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롤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개개인은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 평등한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득의 보다 큰 총량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다 더 작은 인생 전망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기본권리와 이해관계로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득의 산술적인 총량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로 공리의 원칙을 채택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공리의 원칙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속에 내포된 **호혜성의 개념**과 일치해보이진 않는다.

호혜성의 개념이라는 낯선 개념이 나왔다. 호혜성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호혜성의 원칙은 롤스가 주장하는 제 2 원칙 차등의 원칙의 평등주의적 세가지 근거중의 하나이다.

평등주의적 세가지 근거는 **보상의 원칙, 호혜성의 원칙, 박애의 원칙**이 있다.

(1) 보상의 원칙(principle of redress)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의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한다. 보상의 원칙은 간단하게 말해서, 출생에 따른 모든 불평등이 부당한 차별을 낳고, 그러한 차별은 보상(redress)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이란, 보상의 원칙에 의해 선정되는 고려 사항들에 중점을 준다는 사실이다. 보상의 원칙이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원칙으로서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부당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어떤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즉 진정한 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마땅히 보다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 사상은 평등에로의 방향을 향해서 우연적 여건의 편향을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게 되면,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의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이 소비될 것이다.

[차등의 원칙이 불리한 조건을 똑같이 해주도록 사회에 요구하지는 않지만,] 차등의 원칙은 예를 들어 교육에 재원을 할당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켜주게 된다.

그래서 비록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의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해주고 있다. 그것은 기본 구조의 목표를 변형시킴으로써 총체적 제도 체제가 더 이상 사회적 효율성이나 기술 지배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common asset)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보다 큰 천부적 능력이나 공적을 사회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하지만 물론 이것이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하거나 없애야 할 이유는 아니다. 그 대신 **기본 구조는 이러한 우연성이 최소 수혜자의 선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아무도 대신에 보상해줄 이익을 주거나 받음 없이는 그의 천부적 자질이나 최초의 사회적 지위가 갖는 임의적인 위치를 사용해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사회 체제를 세우고자 한다면 **차등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

[롤스, 『정의론』]

(2) 호혜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

호혜성은 상호 이익의 원칙을 말한다. 사회는 시작부터 유리한 사람을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체제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유리한 사람이나 불리한 사람의 복지가 협력 체제로서의 사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이런 협력 체계가 없다면 아무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든 이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려면 그 체제의 협력 조건이 합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차등의 원칙을 합당한 협력의 조건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공정한 기초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조건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공정한 기초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협동 체제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타고난 자질의 배분으로 정해진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권리로서 응분의 몫이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3) 박애의 원칙(principle of fraternity)

박애의 원칙은 처지가 불운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더 큰 이익이 올지라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관념을 말한다 이러한 관념은 차등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경우에 성취된다. 즉 더 불운한 사람보다 처지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불운한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체제 아래서만 더 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제도와 정책이 허용하는 불평등이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복지에 이바지할 때 박애의 요구는 충족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유 평등 박애 등의 이념은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석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자유는 제 1 원칙에, 평등은 제 1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그리고 박애는 차등의 원칙에 상응한다.

다시 원초적 입장으로 돌아가서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다음 두가지 원칙을 채택할 것이다.

1.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할당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할 것
 - 2-1.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는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 2-2.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최소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이를 제 1 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 2-1 원칙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제 2-2 원칙 : 차등의 원칙 이라고 정의한다.

제 1 원칙은 제 2 원칙에 우선하므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